###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제정 2022. 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진흥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진흥원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 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진흥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진흥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진흥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진흥원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 ⑤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고위임직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임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로서 진흥원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진흥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진흥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 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진흥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20조 따라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 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진흥원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진흥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ㅎ	ト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	시를 합	남니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성명		소속		직위(직급	1)				
신고·신청인	① 담당 업무									
	성명		소속			1	 개인	[		 벜인
					[	_	단체	_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자	③ 관련 직무									
사적이해관계자)										
	④ 직무관련자 [ ] 고지되어 지모스	해고! 고!건 :	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0.7=	וסוור בו-	الم	버이	CC L	- г	ᆈ
	-		가여 필정한 행위다 모시들 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						든	단체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충돌 방지법」제5조	에 따라 의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지	다를 신	[고하고	회고	디를 선	· 신청	합니	l다.
					년		달	실		일
			신고·신청인					(서당	병 또	는 인)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은 신청인이 작성하시		]에는 해당하는 곳에 √				(앞 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성명		소속		=	] 개인 [ ] 단체 [	] 법인 ] 공직자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직자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			- 자 [ ] 기	타		
			d이해관계자의 신고 ! d을 저해할 우려가 있				릴
기피 신청사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제52	E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공직지	i의 직무 수	행 관련 기	피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	진흥원 원장 귀	중	신청인			٨)	서명 또는 인)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는 곳에 √ 표시들 압니다	Γ.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세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sup>3</sup> 바의 거래 신고)	직무 관	관련 부동산 보유·매	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	니자 (공직자	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	청)		
조치대상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 ] 직무수행의 일· [ ] 직무 재배정		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 ] 기타(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조치결과		를 방지법」?	: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sup>:</sup> 위(직급)(		행 여부의 확인·점	
기타 참고사항						
	해충돌 방지법」제 화 같이 통보합니다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	<b>사</b> 적이	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년 월	일 일
	한	국인터넛	[진흥원 원장			(서명 또는 인)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공립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이	게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를 합니다	ł.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일		
신청인	성명 ① 담당 업무		소속		직위(직급)		
	Link						
	성명		<b> </b>		연락처		
직무관련자	② 관련 직무						
	[ ] 공직자의 직무· [ ] 공직자가 소속된	수행과 관련하 민 공공기관과	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다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 려는 것이	로 받는 개인0   명백한 개인이	나 법인 또는 나 법인 또는	는 단체
		TIT4 [ ]	지민 고도스웨지의 되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내디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또는 인)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성명			소속						
제출인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	  인·단체 등									
근무기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	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업무	무내용 			
관리·운영하였	던 사업 등	•								
근무기	간	업	체명(소재지)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	간	근	무처(소재지)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	지법」제8	조에 따라 민간부	문 업무활동 내역	을 위와	같이 제출합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넛	[진흥원	원장 귀	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7호 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은 신고인이 삭성하지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들 합니	<u> 구</u>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인								
	성명		신고인과의 괸	-계				
			[ ] 보이 [	] 보이이	진계조	돌속·비속 [ ]	배우자	
거래자	연락처			· =		- ¬ ¬ ¬ .  직계존속·비속		
						1 4/11=4.014		
				관계사업지	<u> </u>			
	성명		소속	연락:	처		- I - I	1 11161
	80				^1	[ ] 개'	_	] 법인
						[ ] 단:	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	- - - - - - - - - -	하여 일정한 행	위나 조치를	를 요구히	하는 개인이나 법	법인 또는	- 단체
거래상대방	[ ] 공직자의 직무수							
71-110 110	[ ] 공직자가 소속된							
			· ·— ·— · ·					그 진제
	[ ] 공직자의 직무= ③ 신고인의 담당 업					으로 받는 나는	공식사	
	의 선포인의 담당 답	十五 선단인	: 기대정대당의	역구원인성	5			
	[ ] 금전 차용	[ ] 금	·전 대부 [	] 유가	증권 거	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u> </u>			
	[ ] 부 <del>동</del> 산(토지	또는 건축물	: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성	ŀ			
거래내용				71-11 11 0	,			
	거래금액			거래원인	l			
				1 1 1 2	-			
	[ ] 물품 계약		 ·역 계약 [	] 공사	게야	 [ ] 기	타게이	ŧ
		[ ] 0	7 / 1			[ ] * [		1
	계약체결일			계약사형	<b>,</b>			
	71711701			0.10.11.2	<u> </u>			
	거래금액			거래원인	<u>!</u>			
÷1 ¬ +1 ¬								
참고자료								
				<b>3</b> -1 -1 -1 -1				
'공식자의 이하	배충돌 방지법」제92	도에 따라 5	위와 같이 직무	<sub>부</sub> 관련자외	의 거리	개들 신고합니다	<b>-</b> †.	
							C!	-1
						년	월	일
			신고연	)			(서 5	명 또는 인)
			ر عد ر	_			71 0	J — L L)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우	시(직급)				
채용기관		채용사유							
채용대상지	ŀ	성명	주소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ol> <li>가족채용</li> </ol>		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기관</b> ' <b>당하는 공직자</b> 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U 217410		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기관</b> · <b>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b>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_	받는 <b>∤자의</b>	[ ] 예 [ ] 아니오						
		· · · · · ·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의 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역						
				년	월 일				
		채	용대상자(확인인)	_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b> </b>	M E M C		(1쪽)								
-40 12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1-1)								
	발주내용		Г	] 공사 [ ] 용역								
발주자	킬 <b>구네</b> ㅎ		l I	] 등자 [ ] 용력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L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			[	] 단체 [ ] 기타								
(확인인	)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2								
		<b>라의 직계존속·비속에</b>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2)		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원 지계조소 비소에 테드턴 느낌이	<del>톨속</del> ·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바주기과(사하기과)이 <b>가도기</b> 과	식계 <del>간속</del> 미속에 해당하는가? 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ᄁᄓ	] 해당없음								
3		인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L	] 해당없음								
		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지 이렇는 배우지의 지계조소 비소에	l의	] 예 [ ] 아니오								
4	작계관속·미속 또는 정계를 실 해당하는가?	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5)		,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b	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b>시 직계존속·비속</b> 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속비속 [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b>직계존속·비속</b> 에 해당하 <del>는</del> 가? 	]	] 해당없음								
7		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b>또는 단체</b> 에 해당하는가?		l	] 해당없음								
		해 <b>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b> 지의 자계조소 비소, 세계로 가진	-1 -									
		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del>'독으로 또는 <b>합산하여</b> ① <b>발행주</b>·</del>		] 예 [ ] 아니오								
8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	-	] 해당없음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 -	1 10 2/1								
	해당하는가?											
「고지지다	나 이해추독 바지번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	여 위인 간	이 화이하니다 마야								
	· · · · ·	너는 가의계속 제를 제한에 데이 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 10												
			년	월 일								
000	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	는 곳어	∥ √ 표시를	를 합니다	<b>라</b>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u> </u>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u></u>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티직 전 <i>:</i>	소속 기	관		
직무관련자 (퇴직자)	[ ] 공직자의 직무수 [ ] 공직자가 소속된 [ ] 공직자의 직무수	○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일시		사유						
접촉 사항	유형 [ ] 골프 [ ] 여	행 [ ] 시		비용투		[ ]	퇴직공무원	[]기	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혀	대충돌 방지법」제15	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	자와의 /	사적 집	접촉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인				(.	서명 또는 인)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별지 제11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에는 해당하는 곳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1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I	과정에서 신.	고인의 신분을 공	개하는 것에 동의	리 여부 [ ] 동.	의 [ ] H	비동의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그 밖의 종업	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경위 및 이유									
위반행위	일시		내용							
신고	21		110							
	장소									
スコココ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위반	행위를 신고합니	니다.			-1			
					년	월	일			
한국인터넷	진흥원 원장 귀	중	신고인	[		(서명 또	는 인)			

### ■ [별지 제12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u>• [ ]에는 해당하</u>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b>구.</b>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 ] 국민권익위원		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	관 [ ] 감사원			
	위원회 신고 접수	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ام الخالما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 ] 법 위반행위			)				
	<ul><li>[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li><li>[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li><li>[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li></ul>							
조사기관 및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조사 결과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위변	반행위 신고	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C	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	기관 한	국인터넛	[진흥원 원장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13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근 곳에 √ 표시들 압니니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	 록버ㅎ				
	80			128	764				
	신고기관								
	진고기판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신고인	[ ] 급 위원영위 결정 등등기원 [ ] 검독기원 [ ] 구자기원 [ ] 검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		접수일자	신분공	당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	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교사그리 소스기기	교사고	 자 연락처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비신고	사 선탁시				
위반행위	신고내용								
신고사항	0								
	조사기관								
	··- 								
ᄌ건ᅯᅯᄀᆝ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종결처리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Ę	월	일			
조사기관 한국		국인터넷	진흥원 원장		(사)	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٨١٦٥١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이의신청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기관		통보일		
통보받은 조치사항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 <sup>3</sup>	그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직위(직급)		연락처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기타(	· 보유·매수 신고 ·활동 내역 제출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하	충돌방지담당관	관 (서명 또는 인)			